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3월 5일, 심현정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3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심현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3. 14.)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심현정 의원(대표 발의)
- 제안일자 : 2024. 3. 5.
- 회부일자 : 2024. 3. 13.
- 상정일자 : 2024. 3. 1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1)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개정되었고,¹⁾ 부칙 제2조에서 지자체는 시행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새로 결정하도록 함.

나. 입법의 취지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평창군의정비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별표 1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법정 절차에 따라 정하여진 대로 상향 조정함.

현 행			개 정		
[별표 1] <u>의정활동비 지급기준</u>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u>의정활동비 지급기준</u> (제3조제1항 관련)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명	월 900,000원	월 200,000원	의원 1명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3. 12. 14.

5. 종합검토의견

-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최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2]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현 정 의원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
----------	-----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5일

대표발의자: 심현정 의원

발의자: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표5]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개정에 따라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 제3조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2024. 2. 27. ~ 2024. 3. 4.(7일간), 의견 없음

라.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과정 및 결과

1)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2024. 1. 12.(금)

2)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2024. 1. 18.(목)

3)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2024. 2. 21.(수)

-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내용: 1인 월 1,500천원

「붙임 1」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지급기준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명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p> <p><u>의정활동비 지급기준</u></p> <p>(제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지급기준</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의정활동비</th> </tr> <tr> <th style="width: 35%;">의정자료수집·연구비</th> <th style="width: 50%;">보조활동비</th> </tr> </thead> <tbody> <tr> <td>의원 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9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200,000원</td> </tr> </tbody> </table>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명	월 900,000원	월 200,000원	<p>[별표 1]</p> <p><u>의정활동비 지급기준</u></p> <p>(제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지급기준</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의정활동비</th> </tr> <tr> <th style="width: 35%;">의정자료수집·연구비</th> <th style="width: 50%;">보조활동비</th> </tr> </thead> <tbody> <tr> <td>의원 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1,2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300,000원</td> </tr> </tbody> </table>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명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명	월 900,000원	월 200,000원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명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붙임 2」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위원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위원회는 그 의정비심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

체 없이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제71조 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새로 임명 될 때까지 종전의 제71조제7항제1호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인상함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3조(지급기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1인당 연간 의정활동비 산정액 : 18,000천원 (1,500천원 × 12개월)

나. 추계 결과: 연126,000천원(2024년 기준)

- 산출기초: 1인 연간 의정활동비 18,000천원 × 7명

다. 재원조달 방안: 자체수입(군비)

라.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630,000
의정활동비 (205-01)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630,000
재원 조달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630,000
자체						
수입						
소 계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630,000
지방세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630,000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
연락처	(033) 330 - 2500

